

경영학, 국제경영학 전공 조교장학금 및 생활비 지급규정

2005.03.01 제정 2011.05.31 개정
 2005.09.01 개정 2011.12.13 개정
 2009.02.02 개정 2012.07.09 개정
 2009.10.10 개정 2012.10.09 개정
 2010.12.07 개정 2013.11.26 개정
 2011.03.02 개정 2016.07.01 개정
 2018.05.01 개정

제 1 조 (목적) 이 내규는 우수한 대학원생을 유치하고 재학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학원 경영학과 및 국제경영학과의 연구역량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은 법령 또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개인 및 교외 장학기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의한다.

제 3 조 (조교장학금 지급 기간) 조교장학금 지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① 박사과정: 최대 8 번까지 지급 할 수 있다.

단, 본교 석사과정 출신 박사과정 학생은 석사과정 시 조교장학금을 수혜한 기간을 총 지급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.

② 석박사통합과정: 최대 10 번까지 지급할 수 있다.

③ 석사과정: 최대 4 번까지 지급할 수 있다.

제 4 조 (조교장학금 신청자격 및 선정)

① 경영학과 및 국제경영학과에 Full-Time 으로 박사/석박사통합/석사과정에 있는 재학생 및 수료연구 재학생으로 다음 각 호를 충족해야 한다.

이 규정에서 Full-Time 학생이라 함은 직장을 갖지 않거나 직장이 있더라도 휴직상태에 있어야 하며 그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아야 한다.

1. 조교신청서 및 근무수행약정서를 제출한 학생

2. 장학금 신청 직전학기 성적이 3.5 이상이거나 누적평균 3.5 이상인 학생

단, 3.5 에 미달하는 경우, 1 회차는 경고조치, 2 회차는 50% 조교임용, 3 회차 이상은 0% 조교임용의 벌칙을 부과한다.

3. Full-Time 학생 중 직전학기 및 해당학기 최소 8 학점(3 과목) 이상을 취득한 학생

단, 2 학기 이상 마친 Full-Time 학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 예외로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다.

ㄱ. 수료요구학점이 8 학점 이하로 남아 수료요구학점 전체를 수강하는 것을 증명한 경우

ㄴ. 전공 교과과정 개설 상의 필요(개인적인 사정은 제외)로 인해 학생이 8 학점 이하를 신청하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전공주임교수가 사전 허락한 경우

4. 첫 학기를 제외한 재학생 및 수료생의 경우 근무수행 담당교수의 추천서를 받은 학생

5. (장학금반환) 본인에 사정에 의해 임기 중에 해임을 원할 때에는 이미 수령한 장학금을 잔여임기 비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

② 장학금 수혜자는 대학원 학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대학원장이 정한다.

③ 학업성적 불량, 조교 근무 태도 불성실 등의 사유로 전공주임교수가 조교장학금 배정에서 제외할 것을 학과주임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학과주임은 해당 학생의 소명을 들은 후 대학원 학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, 대학원 학과관리위원회에서 제외여부를 결정한다.

제 5 조 (장학금 종류 및 생활비 지급 기준)

① Full-Time 박사과정 재학 장학금(Full Scholarship):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. 수혜자는 원칙적으로 1 과목 강의, 또는 연구조교 또는 주당 20 시간에 준하는 교육조교를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Full-Time 박사과정 수료연구 재학 장학금: 생활비. 연구조교 또는 주당 20 시간에 준하는 근로를 수행하는 교육조교로서 조교임용 규정에서 정한 박사과정 임기(4 회) 외에 최대 4 번, 석박사통합과정 임기(8 회) 외에 최대 2 번까지 지급한다.

③ 생활비: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.

1. 2004 학년도까지의 입학생은 월 20 만원을 지원한다.

2. 2004 학년도 이후 입학생 중 재학생은 아래 조항에 따라 지급한다.

- 직전 학기 평균 평점 3.5 이상 또는 누적평균 3.5 이상 : 소정의 생활비를 지급하며 그 액수는 대학원 학과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- 학업성적 불량, 조교 근무태도 불성실 등의 사유로 전공주임교수가 조교 장학금 배정에서 제외할 것을 부원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부원장은 해당 학생의 소명을 들은 후 대학원 학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, 대학원 학과관리위원회에서 제외여부를 결정한다.
- 박사과정은 입학한 학기로부터 8 번까지, 석박사통합과정은 입학한 학기로부터 10 번까지 지급한다. (단, 석박통합 중도 진입자는 통합과정에 진입한 학기로부터 8 번까지 지급한다.) 또 수료여부와 상관없이 휴학 학기는 포함되지 않는다.

- ④ Full-Time 석사과정 재학 장학금: 등록금 전액. 수혜자는 연구조교 또는 원칙적으로 주당 20 시간에 준하는 근로를 수행하는 교육조교여야 한다.
- ⑤ 대단위강의조교 장학금: 수강인원 100 명 이상의 강의를 지원하는 조교는 대학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.
- ⑥ 75%, 50% 조교는 고려대학교 조교임용 규정을 따른다.

제 6 조 (조교장학금 배정순위)

- ① 경영대학(원)의 장학금 배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1 순위: Full-Time 박사과정 (석박사통합과정 포함) 및 박사 수료연구 재학생
 2. 2 순위: Full-Time 석사과정
 3. 3 순위: 대학원 학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석박사과정

제 7 조 (조교장학금 및 생활비 재원) 장학금 재원은 1 차적으로 매 학기 대학원에서 배정하는 연구조교 장학금 및 교육조교 장학금으로 충당한다. 그 외(생활비 포함)에는 경영대학(원) 자체장학기금 등으로 충당한다.

제 8 조 (조교장학금 및 생활비 지급 시기) 매학기 휴·복학 및 최종등록 마감 후 1 개월 이내에 지급하고, 생활비는 매월 말에 지급한다.

- 제 9 조 (기 타) ① 본인이 소득이 있거나 외부기관 장학금 또는 그 이외의 학비보조를 받는 경우에는 Full-time 장학금 수혜대상자에서 제외한다.
- ②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이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및 탈락할 경우 생활비 지급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.
 - ③ 이 내규에 정해진 이외의 사항은 법령과 본교의 장학금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, 특별한 경우에는 대학원 학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

제 10 조 (박사과정 연구실 배정) 박사과정 (석박통합과정포함) Full-Time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연구실을 배정한다.

- ① 연구실배정은 보장된 것이 아니며, 가용한 연구실 공간이 있을 경우에 이루어진다.
- ② 박사과정은 입학년도로부터 5 년 까지 연구실을 배정한다.
- ③ 석박사통합과정은 입학년도로부터 6 년 까지 연구실을 배정한다. 단, 석박통합과정 진입자의 경우 진입한 학기부터 5 년까지 배정한다.
- ④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 연구실 배정 기간은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하며, 휴학과는 상관없이 적용된다.
단, 대학원 학칙 17 조(휴학기간)에 제외되는 군복무, 임신, 출산, 육아, 창업으로 인한 휴학은 적용하지 않는다.
- ⑤ 휴학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연구실을 배정하지 않는다.
- ⑥ 석사는 연구조교일 경우 공간이 허락될 경우에만 배정한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05 년 9 월 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

- 2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09 년 2 월 2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

- 3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0 년 3 월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

- 4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0 년 12 월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

- 5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1 년 2 학기 조교장학금 및 생활비 결정 시부터 개정 시행한다.
단, 제 10 조 3 항의 단서조항은 2011 년 1 학기 석박통합과정 진입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- 6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2 년 7 월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

- 7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2 년 10 월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

8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3년 11월부터 개정 시행한다.
단, 제 4 조 ①-2 단서조항은 2014년 3월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9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6년 7월부터 개정 시행한다.

10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8년 5월부터 개정 시행한다.

[별표 1]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 생활비 지급원칙

| 과정 | 내규 | 지급기간 | 비고 |
|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|---|
| 박사 | Full-Time 으로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며 교육조교의 경우 주 20시간에 준하는 근로를 제공한 학생 | 입학한 학기부터 8 번까지 지급 | 휴학학기는 포함하지 않음 |
| 석박통합 | 상동 | 입학한 학기부터 10 번까지 지급 | 석박통합 중도 진입자는 통합과정에 진입한 학기로부터 8 번까지 지급, 휴학학기는 포함하지 않음. |

[별표 2]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 연구실 배정원칙

| 과정 | 원칙 | 배정기간 | 비고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|
| 박사 | Full-Time 만 배정 | 입학한 연도로부터 5 년까지 | 석박통합 중도 진입자는 통합과정에 진입한 연도로부터 5 년까지 배정 연구실 배정기간에 휴학기간도 포함 (단, 대학원 학칙17조(휴학기간)에 제외되는 군복무, 임신, 출산, 육아, 창업으로 인한 휴학은 적용하지 않는다.) |
| 석박통합 | Full-Time 만 배정 | 입학한 연도로부터 6 년까지 | |
| 석사 | 연구조교일 경우만 배정 (단, 초빙교수 연구조교도 배정) | 연구조교 근무기간만 배정 | 박사, 석박통합 과정에 우선 배정 후 공간이 남을 경우에만 배정 |